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**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**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

1. 관련

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(2022. 12. 27.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- 나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의료비지원실-2023-제4호(2023. 3. 31.) 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’ 개정 공고

2.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‘중증 아토피성 피부염(L20.85, V308)’ 의 산정특례 등록기준(검사기준)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변경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검사기준 (소아 검사기준 완화)	※ 연령 제한 없음. (증상) 3년 이상 지속 (치료기간) 국소치료제 4주 이상 ,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※ 등록일 6개월 이내 투여 이력 (EASI) 23 이상 (재등록)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광선치료 매년 6개월 이상	성인·청소년 : 기존 기준과 동일 소아 : 등록기준 완화 (증상) 1년 이상 지속 (치료기간) 국소치료제 4주 이상 투여 ※ 등록일 4개월 이내 투여 이력 (EASI) 21 이상 ※ 임상사진 제출 필수 (재등록) 특례기간 중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

나. 시행일: 2023. 4. 1.

다. 세부내용: ‘붙임’ 참고

※ 본 내용 관련 ‘붙임’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국민과함께>뉴스/소식>공고입찰)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.

- 붙임
1.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록기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부.
 2.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1부.
 3.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.
 4.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규대조표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

대리 임정민

팀장

송지원

부장

전결 3/31

이경원

협조자

시행 산정특례운영부-430 (2023.3.31.) 접수 ()
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, 21층 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) / <http://www.nhis.or.kr>
전화 033-736-4648 전송 033-749-9616 / jungmin@nhis.or.kr / 공개